



문 의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	과 장 남영택 사무관 곽수홍	042-481-3573
	2016년 3월 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3월 3일(목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	

특허청, 125개 KOTRA 무역관을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초기대응 서비스 제공

- 특허청, 3월부터 해외 IP 분쟁 초기대응 서비스 지역 확대 -

특허청(청장 최동규)은 3월부터 전 세계 125개 KOTRA 무역관을 통하여 해외 지재권 분쟁 발생시 초기단계에 즉시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.

종전에는 해외 지재권 분쟁시 해외 지식재산센터(IP-DESK)가 위치한 11개 도시에서 KOTRA를 통한 지원이 가능하였으나,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본사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등 분쟁 초기 대응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.

* IP-DESK 설치 지역 : 뉴욕, LA, 도쿄, 프랑크푸르트, 베이징, 상해, 청도, 광저우, 심양, 방콕, 호치민

기업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과 KOTRA는 올해초 KOTRA 본사에 “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”을 신설하고 본사 및 전 세계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에 대한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.

지원대상은 해외 진출(예정) 중소·중견기업이며, 지재권 분쟁 발생시 현지 전문가를 이용한 법률자문 및 대응, 모조품 단속 및 침해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. 법률자문은 분쟁유형에 따라 소요비용의 50~70%를 제공하고 침해조사시 소요비용의 70%까지 연간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.

아울러, 분쟁이 확대되어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제공하는 법률 및 특허분석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쟁 대응 컨설팅을 연계 지원한다.

LED 조명기기 등을 수출 중인 중소기업 필룩스 노시청 대표는 “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선점당한 상표를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”고 하면서 “해외진출기업들이 분쟁발생 초기에 동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”라고 밝혔다.

한편, 지재권 분쟁 초기대응 사업의 지원범위, 한도 등 세부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지원과(☎042-481-5085) 또는 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(☎02-3460-3357~8, ip-desk@kotra.or.kr)으로 문의하면 된다.

붙임 : '16년 해외 지재권분쟁 초동대응 지원사업 공고

[붙임]

'16년 해외 지재권분쟁 초동대응 지원사업 공고

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IP 보호확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“해외 지재권분쟁 초동대응 지원사업”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. 3. 4.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

1. 목 적

- 해외* 현지 지재권분쟁에 대한 초동대응 지원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

* 해외지식재산센터(IP-DESK) 소재 국가(중국, 미국, 태국, 베트남, 독일, 일본)는 제외함

2. 신청자격

-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*·중견** 기업으로써,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(예정)중인 자

*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

** 중견기업 : 「산업발전법」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

3. 지원내용

- 지재권 법률자문
 - 해외 현지 지재권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비용지원

구분	세부내용	비용*	횟수
분쟁 예방	○ 해외 진출 시 발생 가능한 분쟁 위험요소에 대한 자문 * 선행특허·유사상표 검색, 지재권 침해여부 검토 등	소요비용 50% (건당 \$1,000한도)	연 4건/1社 (분쟁 예방
분쟁 대응	○ 경고장 접수 등 실제 분쟁 발생에 따른 대응 자문 * 상표 무단 선등록, 경고장, 이의신청 등 대응	소요비용 70% (건당 \$3,000한도)	및 대응 통합)

* 자문제공 전문가가 국내(소재) 로펌인 경우는 한화 기준 한도(예방: 1백만 원, 대응: 3백만 원) 적용

○ 침해조사

- 해외 모조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지원

구분	세부내용	비용*	횟수
침해조사	○ 모조품 유통현황 파악, 출처 추적 등	소요비용 70% (건당 \$6,000한도)	연 1건/1社 (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통합)
행정단속	○ 침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침해기업 현장 단속 및 법률조치, 세관조치 지원 등	소요비용 70% (건당 \$10,000한도)	

* 침해조사 등 제공 전문가가 국내(소재) 로펌인 경우는 한화 기준 한도(조사 6백만 원, 단속 10백만 원) 적용

4. 지원 절차



○ (신청 및 접수) 신청기업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KOTRA 제출

- (국내)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(ip-desk@kotra.or.kr)
- (국외) KOTRA 해외무역관별 담당자

* 지원 신청서 작성 시 자문수행 전문가 지정 신청

- (지원 대상기업 선정) 접수된 신청서를 통해 지원대상 적격 여부 심사하여 지원 가부를 판단
 - 지원결정시 이를 신청기업과 수행 대리인에 통지
 - * 개성공단 피해기업 및 TIPS 프로그램 참가업체(창업진흥원)의 사업신청 시 예산 범위 내 최우선 지원
- (기업지원) 국내·외 전문가는 선정기업에 유선, E-mail 등을 통해 신청서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자문 또는 침해조사 지원
 - * '16년 상반기 내 해외 현지 무역관별 현지 전문가 풀 구축 후 추가공지 예정
- (비용지급) 국내·외 전문가는 지원기업 및 KOTRA 대상 비용지급 요청
 - (지원기업 대상) 기업분담금 지급 요청
 - (KOTRA 대상) 구비서류*를 포함하여 KOTRA(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또는 해외무역관)에 비용 지급 요청
 - * 구비서류 : 비용지급 요청공문, 자문계약체결서, 결과보고서, 기업분담금 지급근거, 세금계산서(VAT 포함), 지급통장 사본

5. 신청방법 및 문의처

- 신청기간 : '16. 3. 4.(금) 이후 수시 접수
 - 신청서 양식은 E-mail 수령 또는 공고처 홈페이지*에서 다운 가능
 - *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지식재산전략원, 한국지식재산보호원(국제지재권분쟁 정보포털 포함),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, 한국무역협회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
- 신청서 제출 : E-mail 제출
 - (국내)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(ip-desk@kotra.or.kr)
 - (국외) KOTRA 해외 현지 무역관별 담당자
- 문 의 :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황규철 전문위원
(02-3460-3351, gchwang@kotra.or.kr)